

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1436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나11634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143622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진, 담당변호사 하동권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 선고 2021. 7. 1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2018. 8. 22. 접수 제679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12. 23.경 C, D와 사이에 용인시 E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4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C은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7. 10. 22. 위 공사를 포기하면서 원고에게 미시공분에 대한 공사비 10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54,550,000원 등 합계 154,550,000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C은 2017. 10. 22. 원고로부터 그 동안 차용한 73,000,000원을 2018. 3. 31.까지 변제하고 연 5%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며 만일 3회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C은 2018. 4. 8. 원고와 사이에 위 미시공분에 대한 공사비 및 손해배상금, 대여금 합계 227,550,000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하되, 3개월 동안의 이율을 연 5%에서 연 7%로 변경하기로 추가 약정하였다.
- C은 2018. 8. 14. 아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대전지방법원 2018. 8. 22. 접수 제679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18. 8. 22. 현재 C이 보유한 주요 재산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F건물 G호	2400	2470	없음
2	H호	2400	2470	없음
3	I호	2400	2470	없음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1000~23400	17940	3060~5460

○ 원고는 C, D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합1247 판결에서 22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유성구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값어치가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C의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 측에 2018.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이 C의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로서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2021. 4. 28.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C이 피고와 현재 이혼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이상 재산분할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8. 22. 접수 제679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호석

별지